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5. 3. 24.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01호로 2025년 3월 10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기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우범
지역, 재난·재해 우려지역 등 공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영상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개인
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1조~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 사항 신설(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03.11.~2025.03.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구체화하고, 신규 설치 후 평가·환류과정을 신설하여 설치목적의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공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 제25조(위원회 기능)**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에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의 우선순위 결정”을 명문화함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2023.03.14.)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정의가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제명 및 정의 등에 반영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검토결과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비용을 살펴보면, 57대 신규 설치하기 위해 12억 6,000만원(시:구 5:5)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대당 약 2,200만원으로 산출됨. 이렇듯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설치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곳 또는 설치목적의 효과가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할 것임.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적재적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우선순위 결정”을 명문화하였음.

-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후 설치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설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환류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효과를 극대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영등포구의 공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영등포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 절차

- 동주민센터 및 영등포경찰서 설치장소 추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설치장소 현장실사(설치가능여부 확인)
 - 주민동의서 수합 및 행정예고 실시
 - 설치장소 최종확정

참고 자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